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11(수) / 총 3매(본문2, 붙임1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상수, 사무관 박주환, 주무관 신정옥 • ☎ (044) 201-4244, 4245, 4246
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박태규, 주무관 김영재 • ☎ (044) 201-4259, 4311, 4279
	항공교통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권혁진, 주무관 신재호 • ☎ (044) 201-4294, 4192, 419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운항규정 위반, 객실승무원 음주 등에 대해 항공사에 8억 1천만원 부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1일(수),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,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, 항공전문의 등*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

* 제주항공 3건, 티웨이항공 1건, 에어서울 1건, 항공종사자 등 4건

-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전(9건)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,
- 제주항공의 경우, ①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-청도 구간 이·착륙('19.2.28)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,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(기장 30일, 부기장 30일)를 처분하였고,
 - ② 제주항공 2305편('19.7.20)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, ③ '19.8.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(4명)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(기장 2명 30일, 부기장 2명 30일) 처분을 의결하였다.
 - 에어서울은 '19.7.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의결하였다.

- 아울러, '19.8.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(2명)에게는 자격증명효력 정지(기장 15일, 부기장 15일) 처분을 의결하였다.
- 또한,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,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(1명)에게 신체검사 금지(2년)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(30일)하고,
 -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(1명)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(3개월),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(1명)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(30일)를 각각 의결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, 안전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특히,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,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박주환 사무관(☎ 044-201-4245), 항공운항과 박태규 사무관(☎ 044-201-4311), 항공교통과 권혁진 사무관(☎ 044-201-41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심의결과 : 과징금 8억 1천만 원**

상정안건 (처분대상)	심 의 결 과				비 고
	과징금 (만 원)	운항정지 (일)	자격정지 (일)	과태료 (만 원)	
① 제주항공8401편 Anti-Skid 부작동 시 운항절차 미준수 <속행>					
• 항공사	60,000	-			제동장치 부작동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처분
• 조종사1			30	-	
• 조종사2			30	-	
② 제주항공2305편 관제구역 비행 중 무선통신 두절 <신규>					
• 조종사1			30	-	장시간 동안 비상주파수 및 관제주파수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처분
• 조종사2			30	-	
③ 제주항공147편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 <신규>					
• 조종사1			30	-	활주로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처분
• 조종사2			30	-	
④ 티웨이항공903편 지상이동 중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진입 <신규>					
• 조종사1			15	-	관제지시 불명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1/2 감경
• 조종사2			15	-	
⑤ 관제사 인적오류로 항공기 근접비행 발생 <신규>					
• 관제사			미처분	-	악기상, 관제여건 등을 고려 시 관제업무 중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처분
⑥ 울산관제탑의 무선교신 일시중단 및 항공안전의무보고 누락 <신규>					
• 관제사			30 ^①	15 ^②	①관제사의 현저한 주의결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처분 ②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1/2 감경
⑦ 신체검사 신청서 상 과거병력 미기재 등 <신규>					
• 조종연습생			30	-	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없이 조종연습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안처분
• 항공전문의			1.5개월	-	수검자의 과거병력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1/2 가중처분
⑧ 신체검사자 의료기록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 발급 <신규>					
• 항공전문의			1.5개월	-	수검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어 1/2 가중처분
⑨ 에어서울 소속 객실승무원 음주단속 적발 <신규>					
• 항공사	21,000	-			종사자 전수음주측정 의무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1/2 감경